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75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 의 자 : 신정훈 · 김 현 · 박선원
임호선 · 차지호 · 김준형
채현일 · 모경중 · 안도걸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정당 현수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이 해당 현수막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게시한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을 “제3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 현수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① (생략)	제8조(적용 배제)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시장등은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정당 현수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이 해당 현수막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u> <u>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게시한 경우</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⑨ (생략)	----- ----- ----- ----- -----제3 항을-----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